■ 민족문화연구 제79호(2018.05.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223-250.

전시기(1937-1945) 반일언동 사건과 식민지 조선 민중의 의식*

—식량 관련 '유언비어' 분석을 중심으로—

정병욱**

목 차

1. 서론
2. 전시기 '유언비어' 자료의 성립과 특성
3. 식량 관련 유언비어 분석
4.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식민지 권력 측이 남긴 유언비어 자료를 검토하고 그 자료에 포착된 식민지 민중의 말을 분석하여 그들의 의식과 일상에 접근하는 데 있다. 전시기 식민지 권력 측은 반일언동, 특히 유언비어에 관한 많은 사례를 모았다. 그 이유는 관련 법규의 적용 범위, 양형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담당 검사, 경찰, 헌병의 실무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사례는 실무자들이 범죄의 구성 요소라고 생각한 점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되었다. 식민지 권력 측이 요약한 개요로는 유언비어가 말해진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기 힘들다.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면서 유언비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A8018550).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교수.

1942년 전후 식민지 조선의 식량 관련 유언비어에는 식량부족으로 사상(死傷)에 이르는 이야기가 48%를 차지하고, 그 대부분은 죽음으로 인해 가정이 파국에 이르는 비극으로 끝난다. 가족주의가 강한 사회에서 가정의 파괴야말로 가장 호소력이 있는 주제이다. 이런 비극 이야기는 일본에도 적지 않지만 식민지 조선이 더 극단적이다. 이는 가정을 파괴하는 식민지 권력에 대한 분노를 야기하여 '저항의 저류'가 될 수 있지만, '신파성'처럼 체념을 야기하여 체제를 감수하는 '순응의 저류'가 될 수도 있다.

식민지 조선의 식량 관련 유언비어에 등장하는 식민지 경찰은 일본의 그것에 비해 더 권위적이고 폭력적이다. 보통사람들이 경찰에 바라거나 의지하는 바도 적었고 감히 풍자를 하지도 못했다. 반면에 일본의 유언비어를 보면 일본의 보통사람들의 권력에 대한 동의,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기대와 실망이 보이고, 그래서 종종 경찰은 풍자의 대상이 되었다. 유언비어에 비친 식민지 경찰의 모습에서 식민지 지배는 적어도 민중에게 '헤게모니 없는 지배'였음이 드러난다.

주제어: 전시기, 식민지 민중, 유언비어, 식량부족, 비극 이야기, '헤게모니 없는 지배'.

1. 서론

일본이 중국,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켰던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식민지 조선은 '총후(銃後)'로서 인력, 물자, 자금은 물론이고 사람의 말과 행동, 생각까지 통제되고 동원되어야 했다. 아니 후자의 통제 없이 전자의 원활한 동원은 불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전시기 조선총독부가 말, 행동, 생각을 통제했던 구체적인 모습은 당시 잦았던 각종 '불온언동', 즉 반일언동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유언비어' 단속일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식민지 권력 측이 남긴 유언비어 자료를 검토하고 그 자료에 포착된 식민지 민중[1]의 말을 분석하여 그들의 의식과 일상에 접근하는 길을 여는 데 있다.

전시기 식민지 조선의 유언비어를 다룬 것으로 宮田節子, 박수현, 변은진의

1) 이 글에서 '민중'은 지도층이나 엘리트층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느슨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유언비어'를 발설하여 일제의 검경이나 군에 검속된 자들은 대부분 지도층이나 엘리트층이 아니었다. 지도층이나 엘리트층의 말이 문제가 되는 경우 일제 검경은 '유언비어'보다 주로 '정치에 관한 불온한 언동'으로 다뤘다.

글이 있다.[2] 대체로 이 연구들은 전시기 유언비어를 통해 민중의 심정과 의식을 읽어내려 했고, 그 의식을 운동의 저류나 저항과 연결 지웠다.[3] 한편 山口公一은 유언비어가 왜 발화되었는지 추량하여 그 배경이 된 조선사회의 상황이나 민중의 심성을 읽어내려 했다. 앞의 논문들에 비해 운동과 연결 지우려는 의도는 약하지만 유언비어를 통해 민중의 심성, 특히 전시동원체제에 대한 '불만'과 '비협력'을 밝혔다는 점에서 유사하다.[4]

필자도 유언비어가 민중의 의식이나 심성, 나아가 일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재료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그 발화자 대부분이 '역사 없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유언비어는 그들의 말이 담긴 유일한 자료인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소중하다. 다만 민중의 의식이나 심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첫째, 우리가 읽는 전시기 유언비어는 식민지 권력 측이 자신이 생산하는 '사실'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말을 포착하여 정리한 것이지 곧 민중의 말이 아니라는 점이다.[5] 애초 어긋난 것들을 모아 놓았는데, 그 속에서 어긋난 점

---

2) 宮田節子, 「조선민중의 중일전쟁관—'유언비어'를 통해서—」, 『朝鮮民衆과 皇民化 政策』, 이형랑 역, 서울: 一潮閣, 1997; 박수현, 「중일전쟁기 '流言蜚語'와 조선인의 전쟁 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40집,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4; 변은진, 「유언비어를 통해 본 일제말 조선민중의 위기담론」, 『아시아문화연구』 제22집, 경원대 아시아문화연구소, 2011; 『파시즘적 근대체험과 조선민중의 현실인식』, 선인, 2013, 3장 2절에 수록. 이외에도 이시재, 「日帝末의 朝鮮人流言의 硏究」, 『한국사회학』 제20집, 한국사회학회, 1987과 박용하, 「日帝末期 流言蜚語現象에 對한 一考察」,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0의 연구가 있는데, 이시재가 이용하는 자료는 南博 等 編, 『近代庶民生活誌 ④ 流言』, 東京: 三一書房, 1985에 수록된 일본 '헌병사령부자료'에 나오는 유언비어 중 조선인(주로 재일조선인) 것으로, 이 글이 초점을 맞추는 조선 내 자료군이 아니다. 다만 비교를 위해 상기 자료 일부를 다루겠다. 박용하의 논문은 선구적 연구이나 자료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3) 대표적으로 宮田節子는 다음과 같이 연구목적을 밝혔다. "(유언비어에 초점을 맞추어)투쟁이나 운동의 저류가 되었던 민중의 의식을 다소나마 밝히고자 한다." 宮田節子, 앞의 책, 8면. 변은진도 유언비어를 민중이 감정과 심정을 드러내는 창구로 보고 이를 통해 그들의 위기담론을 밝히고자 했다. 변은진, 앞의 글, 55면. 박수현도 유언비어를 통해 민중의 전쟁 인식, 저항과 분노, 두려움의 표출을 읽어내려 했다. 박수현, 앞의 글, 220-221면.

4) 山口公一, 「'造言飛語'にみる戰時末期の朝鮮民衆と社会」, 『史海』 第57號, 東京學芸大學史學會, 2010, 12면, 23-25면.

5) 이와 관련하여 佐藤健二는 '流言'을 "'객관적' 사실에 대항하는 잘못된 정보, 왜곡된 정보라기보다 어떤 체제-주체가 생산하는 '진리'에 길항하는 언설의 교환이다"고 정의하며, '流言'이 지배층에 의해 어떻게 대상화되는지 상세히 검토 비판하면서 그것과 질적으로 다른 대상화의 길을 찾자고 제

을 발견하는 것은 다소 동어반복이다. 전시기 조선총독부 측이 모아 놓은 '미담'을 근거로 행위자의 의식을 속단할 수 없듯이 '유언비어'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우선 전시기 유어비어를 식민지 권력측이 남긴 '하나의 해석', 즉 텍스트로 간주하고 그 한계와 특성에 주목해보겠다. 이를 위해서는 전시기 식민권력 측이 남긴 민중의 유언비어를 전수 조사하고 다른 자료와 대조해야 겠지만, 우선 기존 연구에서 많이 다룬 자료를 위주로 살펴보겠다.

둘째, 유언비어도 일종의 이야기라고 본다면 자주 반복되는 것, 자주 권력 측에 의해 포착되는 것에는 뭔가 이유가, 민중을 끌어당기는 요소가 있을 것이다. 시험 삼아 이 글에서는 식량 관련 유언비어를 개괄하고 그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몇몇 유언비어를 통해 민중의 의식을 추출해보겠다. 이를 위해 일본의 식량 관련 유언비어와 비교하겠다. 기존 연구에서 전시기 유언비어에 나타난 식민지 조선 민중의 반전, 염전(厭戰), 반국가 의식을 강조했는데, 그런 유언비어는 일본에도 많다. 원래 전시기 유언비어는 그런 것의 집합이다. 그렇다면 식민지 조선의 유언비어는 일본의 유언비어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 부족하나마 접할 수 있는 몇몇 일본의 유언비어 자료와 대조해보겠다.

권력 측에 의해 포착된 것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유언비어'를 민중의 이야기이자 그 일상의 일부라고 간주한다면, 유언비어를 민중의 일상과 구어 세계에 위치 지우고 새로운 해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어떻게 가능할까? 이 글은 그 지난한 길을 찾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다.

2. 전시기 '유언비어' 자료의 성립과 특성

1) 자료의 성립과 목적

전시기 '유언비어' 연구와 관련하여 주로 이용되었거나 주목되는 자료는 〈표1〉과 같다. 이외에도 단편적인 자료가 많이 있으나 일정한 양식에 따라 일정기간 조사 기록되었던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또 일본 내 기관이

안한다. 佐藤健二, 『流言蜚語 : うわさ話を讀みとく作法』, 東京: 有信堂高文社, 1995, 28-34면.

조사 작성한 자료, 예를 들자면 내무성 경무국 보안과의 『특고월보』나 경시청 자료 등은 제외했다. 물론 이 자료들에도 재일조선인의 '불온언동'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권력기관이 불온한 말을 포착하는 방식, 기록 양식은 유사점이 많아 비교 연구가 필요하지만, 우선 식민지 조선에서 작성된 자료를 검토하겠다.

■ 〈표1〉 유언비어, 불온언동 주요 사례 자료[6]

	자료	작성주체	대상/작성 시기	해당 세목	사례 건수* 및 조사 항목
①	朝鮮思想運動概況	朝鮮軍參謀部	36.1-6	朝鮮人部-其他-流言落書상황 (민족/공산 의식, 군사, 미신기타)	- 68건 - 지방/월일/내용/처리
			38.7 -40.6	反軍運動-造言蜚語, 講演, 反軍反戰策動, 反軍反戰的 言動(민족별 구분 없음)	- 23건 - 거주지 및 장소/주소 씨명/ 월일/내용/처리
②	高等外事月報	朝鮮總督府 警務局保安課	39.1 -40.6	高等-特高事變關係-時局犯罪의 趨向-不穩言動流言蜚語處罰表, 其他時局關係犯罪表	- 103건(불온언동・유언비어 83건, 기타 20건) - 도명/요지, 개황/검거 연월/형벌/署名/씨명
③	昭和十六年十二月 秘 第七十九回 帝國議會 說明資料	朝鮮總督府 警務局	41.7-8	1941년特殊事情-流,造言蜚語/不穩言動	- 37건(유・조언비어 25건, 불온언론 12건) - 일시/장소/(범인)/내역/조치
④	思想彙報	高等法院 檢事局思想部	37.7 -40.11	造言飛語の罪に關する調査, 時局關係の犯罪に關する調査_時局二直接關係セル事件	- 349건 - 관내/피의자씨명직업 연령/죄명/범죄사실의 개요/검사처분, 재판결과 및 그 연월일/비고
⑤	大東亞戰爭勃發後ニ於ケル特殊犯罪調: 造言飛語及不敬事件	高等法院 檢查局思想部	41.12 -43.4	造言飛語—군사관계, 경제관계, 기타	- 조언비어 554건 - 청명/직업씨명연령/사실의 개요/처분결과/비고
	大東亞戰爭勃發後ニ於ケル特殊犯罪調: 保安法違反事件及內地等ニ於ケル各種言論事犯	高等法院 檢查局思想部	41.12 -43.7	保安法違反事件	- 85건(일본 등은 제외) 청명/직업씨명연령/사실의 개요/처분결과/비고
⑥	朝鮮檢察要報	高等法院 檢查局	43.12, 44.5-6	時局關係不穩言論事犯, 特殊事件	- 21건(1호-19건, 6호-2건) - 직업/이름나이/내용/처분

* 사건 수가 아니라 자료에 기재된 사례의 수이다. 예를 들면 자료에 39.1-6 '반군반전책동'의 사건 수는 17건인데, 사례는 5건만 예시되었다.

6) ① 朝鮮軍參謀部, 『昭和十一年前半朝鮮思想運動概況』, 1936.8, 37면; 『昭和十一年前半朝鮮思想運動概

〈표1〉을 일별하면 작성 주체가 조선군 참모본부, 경무국, 검사국으로 당시 군·경·검 모두 '유언비어'를 예의 주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朝鮮思想運動概況』은 조선군참모부가 1933년 말 일본 육군성의 의뢰에 의해 반년마다 조선군참모장 명의로 육군차관에 송부했던 보고서로, 보고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현재 1936년 전반기부터 1940년 전반기를 다룬 보고서가 일부 남아 있다. 그 목적은 조선인 징병제 실시를 검토하기 위한 준비 조사였다.[7] 같은 시기 다른 자료와 비교해볼 때 유언비어 중에서 '反軍反戰'에 중점을 둔 자료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자료를 통해 1937년 중일전쟁 이전과 이후의 유언비어와 그에 대한 권력 측의 대처 방식 차이다. 1936년 전반기를 다룬 『昭和十一年前半朝鮮思想運動概況附錄』에 실린 6개월간 '流言·落書' 68건을 보면 그 내용이 1937년 중일전쟁 이후와 큰 차이가 없다. 군사 관련해서 많은 수가 개전, 특히 "일소개전(日蘇開戰)"을 예측하고 있으며 그 징후와 피해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럼에도 군 헌병의 처분은 경찰과 연락하여 '엄유(嚴諭)' 등 훈계, 주의, 방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8] 이는 '유언비어'가 '전시'라

況附錄』, 1936.8, 71-77면; 『昭和十三年後半期朝鮮思想運動概況』, 1939.2, 150-151면; 『昭和十四年前半期朝鮮思想運動概況』, 1939.8, 179면; 『昭和十四年後半期朝鮮思想運動概況』, 1940.2, 242-243면; 『昭和十五年前半期朝鮮思想運動概況』, 1940.8, 300-301면. 이상 宮田節子 編, 『朝鮮思想關係資料集 6』, 高麗書林, 1993에 수록(면수는 이에 따른다) ② 朝鮮總督府警務局保安課, 『高等外事月報』 第1號, 1939.7, 12-14면; 『高等外事月報』 第3號, 1939.9, 14-19면; 『高等外事月報』 第4號, 1939.10, 4-7면; 『高等外事月報』 第6號, 1939.12·1940.1, 4-12면; 『高等外事月報』 第8號, 1940.3, 4-7면; 『高等外事月報』 第12號, 1940.7, 12-17면. 이상 宮田節子 編, 『(十五年戰爭極祕資料集) 高等外事月報』 1-2, 高麗書林, 1988에 수록. ③ 朝鮮總督府警務局, 『昭和十六年十二月 祕 第七十九回 帝國議會 說明資料』, 1941.12, 148-153면.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帝國議會說明資料』(영인본) 第6卷, 東京: 不二出版, 1994 면수에 따른다. ④ 高等法院檢事局思想部, 「造言飛語の罪に關する調査」, 『思想彙報』 제14호, 1938.3, 80-96면; 「時局關係の犯罪に關する調査」, 『思想彙報』 제16호, 1938.9, 34-48면; 『思想彙報』 제18호, 1939.3, 32-51면; 『思想彙報』 제19호, 1939.6, 85-89면; 『思想彙報』 제20호, 1939.9, 62-73면; 『思想彙報』 제21호, 1939.12, 66-75면; 『思想彙報』 제22호, 1940.3, 51-61면; 『思想彙報』 제23호, 1940.6, 68-75면; 『思想彙報』 제24호, 1940.9, 46-50면. ⑤ 高等法院檢查局思想部, 『大東亞戰爭勃發後ニ於ケル特殊犯罪調: 造言飛語及不敬事件』, 1943.5; 『大東亞戰爭勃發後ニ於ケル特殊犯罪調: 保安法違反事件及內地等ニ於ケル各種言論事犯』, 1943.8. 방기중 편, 『일제 파시즘기 한국사회 자료집 2』, 선인, 2005, 409-518면에 수록. ⑥ 高等法院檢事局, 『朝鮮檢察要報』 제1호, 1944.3, 23-28면; 『朝鮮檢察要報』 제6호, 1944.8, 35-38면.

7) 宮田節子, 「『朝鮮思想運動概況』 解說」, 『朝鮮思想關係資料集 6』, 高麗書林, 1993, 1-2면.

8) 朝鮮軍參謀部, 『昭和十一年前半朝鮮思想運動概況』, 1936.8, 37면; 『昭和十一年前半朝鮮思想運動概況附

는 상황에서 권력 측이 만들어낸 '죄'이지 그 이전에는 딱히 처벌받아야 할 '죄'가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발화자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수상한 시절에 늘 하던 얘기인데 어느 시점에 '죄'가 된 것일 수 있다.

두 번째, 세 번째 자료는 모두 조선총독부 경무국(보안과)에서 작성한 자료이다. 1939년 7월부터 월간으로 간행된 『高等外事月報』는 창간호 서문을 보면 1933-1937년간 총 6호 발행됐던 『高等警察報』의 후속편으로 기획되었지만, 방식을 바꿔 '치안상의 특수정세' '중요안건' 등을 매월 분류 정리하였다. 월간, '각도 상호 긴밀한 연락', 내용 분류가 곤란하여 사무분담기구에 따른 배열에 그친 점 등에서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치안'의 급박한 정세가 느껴진다.[9] 『고등외사월보』에는 '不穩言動流言蜚語處罰表', '其他時局關係犯罪表'가 수록되었는데, 이는 『고등경찰보』에는 없는 것이다. '不穩言動流言蜚語處罰表'는 '道名/불온언동·유언 요지/검거연월/형벌/(경찰)署名/씨명'의 항목이 달린 표로 그 양식은 조선총독부 경무국 보안과가 작성한 『治安狀況』의 그것과 동일하다. 『치안상황』은 경무국 보안과에서 중일전쟁 발발경[10]부터 작성하여 관련 기관에 통보했던 문서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접수한 것 일부가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11]에 포함되어있다. 26報(1937.9.14)부터 50報(1938.10.15)까지 총 25보가 남아있는데,[12] 26보부터 '警戒取締狀況' 항목에 불온언동 및 유언의 사례를 보고하고

錄』, 1936.8, 71-77면.

9) 朝鮮總督府警務局保安課, 「서문(はしがき)」, 『高等外事月報』 第1號, 1939.7 참조.

10) 현존 '치안상황'의 작성 주기를 보면 1937년 9월 중순-9월 말 매주 2보씩, 그해 12월까지 매주 1보씩 작성되었고, 1938년 들어서면 1-2주에서 2-3달로 작성 주기가 길어지고 불규칙해진다. 이로 볼 때 현재 확인할 수 없는 1937년 9월 중순 이전은 매주 2보씩 또는 그 보다 더 자주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주된 내용이 중일전쟁 발발에 따른 치안의 특이 사항이므로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 발발 이후 작성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치안상황」,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2018.4.14. 검색).

11) 본 문서의 성격과 소종래에 대해서는 정병욱,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기록과 '사상부(思想部)'의 설치」, 『기록학연구』 제40호, 한국기록학회, 2014 참조.

12) 총 2권으로 편철되었는데, 두 번째 권의 표지제목은 '自四十四報至第四十七報(昭和十三年度), 治安狀況, 警務局保安課'로 되어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47보 이후에도 호수를 매기지 않았지만 3권의 '치안상황'이 더 편철되어 있으며 시기상으로 연결되어 있다. 순서에 따라 48-50보로 간주하였다. 「치안상황」,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2018.4.14 검색).

있으며, 48보(1938.6.10)-50보에는 '道別/불온언동·유언 요지/검거연월/형벌/(경찰)署名/씨명'으로 구성된 '不穩言動及流言蜚語處罰表'가 제시되어 있다. 대략『治安狀況』전반을 보면 1937년 중일전쟁 이후 경무국이 '민심'을 읽기 위해 각계각층의 '言動'을 예의 주시하면서 그중 '불온'한 경우는 처벌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자료는 조선총독부가 제국의회에 설명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에 포함된 것으로『고등외사월보』보다 소략하나 다른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1941년 7-8월의 유언비어, 불온언론을 담고 있다.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자료는 모두 고등법원검사국(사상부)에서 간행한 것이다.『사상휘보』를 보면 고등법원검사국사상부가 공산주의와 민족주의와 같은 '사상사건' 외에 '유언비어'를 포착하였던 것은 1937년 말부터였다. 같은 해 12월에 발간된『사상휘보』13호에 '시국관계 범죄에 관한 조사'라는 제목으로 "지나사변[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시국에 관련하여 여러 범죄가 발생했다. 이제 11월 말까지 (…) 각 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수리 처분했던 이런 종류의 범죄에 대해서 조사한 바를 게재"하였다. 예로든 범죄는 조언비어·사기·시국이용 무고 및 절도·보안법위반이었고, 사상부가 판단하기로 총 49건 중 47건이 '사상과 관계없는 것'이었다.[13] 다시 14호(1938.3)에는 1937년 7월-1938년 2월 '조언비어'만 다룬 조사와 부록에 조선총독부 법무국법무과가 조사한 1937년 7월-12월 '지나사변관계범죄조'를 실었는데, 양자는 항목에 다른 점이 있으나 중복되는 사건이 많았다.[14] 16호(1938.9)부터는 정형화된 양식에 따라 '시국관련 범죄'가 조사 작성되었다. 일정기간 각 지방법원 검사정이 당국에 보고한 것을 기초로 범죄를 '시국에 직접 관계된 사건' '시국을 이용한 사건' '시국관계법령위반사건' 3종으로 나누고 각각 통계와 사건 개요표를 제시했다. 표는 '管內/피의자 씨명 직업 연령/죄명/범죄사실의 개요/검사처분, 재판결과 및 그 연월일/비고'로 구성되었다.[15] 이러한 표의 양식은 마지막 사상휘보가 나오는 1940년 12월까지, 또 속간호가 나왔던 1943년

13) 高等法院檢查局思想部,「時局關係の犯罪に關する調查」,『思想彙報』제13호, 1937.12, 87-93면.
14) 高等法院檢查局思想部,「造言飛語の罪に關する調查」,『思想彙報』제14호, 1938.3, 78-94면; 法務局法務課,「支那事變關係犯罪調」, 같은 책, 303-320면.
15) 高等法院檢查局思想部,「時局關係の犯罪に關する調查」,『思想彙報』제16호, 1938.9, 33-69면.

10월에도 변함이 없었다. 다만 다루는 범죄의 종류에 변화가 있었다. 18호(1939.3)에서 '시국관계법령위반사건'이 '시국관계경제사범'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1940년 이후에는 다루지 않았다. 중일전쟁 이후 총동원체제 하에서 각종 경제통제법규를 위반하는 사건이 많아짐에 따라 1938년 11월부터 각 지방법원 검사국에 경제계 검사를 두었고[16] 1940년경에는 사상부와 별도로 '경제부'를 두어 '시국관계범죄' 중 경제사건을 관할했다. 23호(1940.6)에 "종래 시국관계경제사건의 통계와 범죄사실 개요도 함께 게재했지만, 당국 경제부에서 팜플렛紙를 발행하게 되었으므로 본 호 이후는 생략"한다 했다.[17] 이후 25호(1940.12)까지 시국직접관계 사건과 시국이용 사건 2종이 게재 되다가 속간호(1943.10)에는 시국이용 사건만 게재 되었다. 이는 다섯 번째 자료의 생산과 관련되었다.

다섯 번째 자료도 『사상휘보』와 마찬가지로 고등법원사상부가 발간한 것이다. 1943년 5월 『大東亞戰爭勃發後ニ於ケル特殊犯罪調: 造言飛語及不敬事件』,[18] 동년 8월에 『大東亞戰爭勃發後ニ於ケル特殊犯罪調: 保安法違反事件及內地等ニ於ケル各種言論事犯』을 펴냈다. 사상휘보 속간호(1943.10)를 보면 "'시국에 직접 관계된 사건'은 이제부터 조언비어 사건 혹은 국방보안법위반 사건 등으로 별개 조사하기로 하여" 시국관련 범죄에 시국이용 사건만 수록했다.[19] 아마 별개의 조사 자료집이 위 2권의 『大東亞戰爭勃發後ニ於ケル特殊犯罪調』일 것이다. 『사상휘보』의 '시국관계 범죄에 관한 조사'와 비교해보면 분류와 통계가 다를 뿐 사건 개요 표의 양식은 동일하다. 이후 유언비어 사례가 이러한 양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던 것 같다. 여섯 번째 자료인 『朝鮮檢察要報』에도

16)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사법의 역사로 읽는 대한민국』, 역사비평사, 2010, 455-456면.
17) 高等法院檢查局思想部, 「時局關係の犯罪に關する調查」, 『思想彙報』 제23호, 1940.6, 67면.
18) 이 자료는 종전에 연구자들 사이에서 總督府警察局, 『昭和17年版 朝鮮不穩言論取締集計書』로 알려졌으나 이는 잘못이다. 일본 滋賀県立大學 도서관의 박경식 문고에 '總督府警察局祕, 昭和17年版 朝鮮不穩言論取締集計書'라는 서명으로 제본된 것이 있으나, 그 내용은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에 보존되어 있는 高等法院檢查局思想部 編, 『大東亞戰爭勃發後ニ於ケル特殊犯罪調 : 造言飛語及不敬事件』, 1943.5—이하 『大東亞戰爭勃發後ニ於ケル特殊犯罪調(1943.5)』로 줄임—와 동일하다. 이 자료를 이용한 연구로 山口公一, 앞의 글이 있다.
19) 高等法院檢查局思想部, 「時局關係の犯罪に關する調查」, 『思想彙報』 續刊號, 1943.10, 40면.

간혹 각 검사국에 수리된 시국관계 불온언론사범 사례를 실었으나 특이한 것만 게재했고[20] 내용도 전에 비해 소략하다.

이상 전시기 유언비어나 불온언동 사례가 수록된 대표적 자료를 살펴보았다. 한 가지 생각해볼 점은 사례 수집의 목적이다. 중일전쟁 이후 단속해야 할 유언비어나 불온언동이 많아졌지만, 검경이 이렇게 많은, 그것도 유사한 사례를 수집해서 공유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중일전쟁 이전에도 유언비어 단속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중일전쟁 이후 그 단속과 처벌은 대폭 증가했다. 앞서 보았듯이 조선군참모부가 작성한 『朝鮮思想運動概況』의 중일전쟁 이전과 이후 유언비어 사례를 비교해보면 뚜렷하다. 검경도 중일전쟁 이후 단속 처벌하면서 사례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근거가 되는 법령은 보안법 7조(정치에 관한 불온한 언동,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와 육군형법 99조·해군형법 100조(군사에 관한 조언비어, 최고 3년 이하의 금고)였다. 그런데 어떤 말이 '정치에 관한 불온한 언동'이고 '군사에 관한 조언비어'인가? 1941년경이면 국방보안법(법률49호, 1941.3) '안녕질서에 대한 죄'(법률61호, 형법7장의 2 제105조의 2 추가, 1941.3), '조선임시보안령'(제령34호, 1941.12) 등으로 검사 수뇌부는 "각종 유언부설 단속에 관한 법규가 완비"되었다고 했다.[21] 그럼에도 왜 계속 사례집이 필요했을까? 이후 유언비어 처벌의 주된 법령이 되는 '조선임시보안령'은 '시국에 관한 조언비어를 하는 자', '시국에 관해 인심을 惑亂시킬 수 있는 사항을 유포하는 자'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였다. '시국'이란 용어가 법률 용어로 처음 쓰였는데 광범위하고 모호한 개념이다. 단속 법령의 '완비'로 모든 말이 처벌 가능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 법령을 운영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무엇이 유언비어이고 양형은 적당한지 고민해야 했다. 위의 『高等外事月報』의 '각도 상호 긴밀한 연락'이란 취지도 일종의 정보 공유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으로 읽힌다. 『大東亞戰爭勃發後ニ於ケル特殊犯罪調』의 서문에 "등재된 사건에 대한

20) 高等法院檢事局, 「時局關係不穩言論事犯」, 『朝鮮檢察要報』 제1호, 1944.3, 23면.
21) 高等法院檢事局 編, 「增永高等法院檢事長訓示(1942.5 檢察部長次席檢事及上席檢事會同)」, 『朝鮮刑事政策資料—昭和17年度版』, 1942.5, 14면.

의율(擬律), 과형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도 약간 산견"되지만 "각위의 연찬"을 기대한다거나[22] "(일본과 대만의) 이런 종류 사범의 처리 상황, 특히 의율의 점에 상당히 참고 되는 것이 있다" 했다.[23] 중일전쟁 발발 이후 유언비어 관련 육해군형법이 본격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45년 초에도 '조언비어'와 '군사상 유해'의 의미, '사실'의 범위와 '사실보도'의 방법 등에 관한 판결문을 참고 자료로 수록하였다.[24] 그만큼 실무자들에게는 여전히 모호했던 것이다. 전시기 유언비어, 불온언동에 관한 많은 사례의 집적은 검경 실무자들이 관련 법규의 적용 범위, 양형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실무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뒤에서 보듯이 일정 정도 자료의 성격과 내용을 규정했다.

2) 자료의 특성과 한계

어떤 '유언비어' 발설자가 처벌 받기까지 다음 3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1. 경찰(헌병)의 인지 및 수사 2. 검사의 수사 및 기소 3. 판사의 신문 및 판결.' 앞의 경찰 및 조선군(헌병) 측 자료는 1단계에서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아직 검거하지 못했거나 취조 중인 경우도 더러 있으며, 이는 검사국의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앞의 고등법원검사국 자료는 검사국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수리하여 조사한 뒤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내린 사건을 수록했으며 기소한 경우는 자료를 펴 낼 시점에 3단계를 마친 경우도 적지 않다. 검사국 자료에 나오는 사례는 경찰 및 조선군의 자료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단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위의 자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유언비어를 '개요' 또는 '개황'과 같이

22) 「서문(はしがき)」, 『大東亞戰爭勃發後ニ於ケル特殊犯罪調(1943.5)』.

23) 「서문(はしがき)」, 『大東亞戰爭勃發後ニ於ケル特殊犯罪調: 保安法違反事件及內地等ニ於ケル各種言論事犯』, 1943.8. 일본에서도 유언비어 관련 법규의 적용은 그 개념이나 양형에 통일을 기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해서는 西ケ谷徹, 「支那事変に関する造言飛語に就いて」, 司法省刑事局, 『思想研究資料』 第55號, 1938, 135-137면 참조; 社会問題資料研究會 編, 『社会問題資料叢書』 第1輯, 京都: 東洋文化社, 1978에 수록.

24) 高等法院檢事局, 『朝鮮檢察要報』 제13호, 1945.3, 52면.

요약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유언비어'의 현장성이 사라지게 된다. 단속된 말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맥락으로 어떻게 발화되었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이다. 1938년 김철완 사건을 예로 들어보면 『사상휘보』 19호(1939.6)와 『昭和十四年前半期朝鮮思想運動概況』(1939.8)에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 〈표2〉 1938년 김철완의 '유언비어'[25]

	管內	피의자 氏名	직업/ 年齡	죄명	범죄사실의 개요	검사처분, 재판 결과 및 그 연월일
①	京城 (水原)	金鐵完	-/26	육군형법 제99조 위반	장고봉사건 때 매일 露國 비행기가 4, 50대 날아와 폭탄을 투하하여 일본군에 다수의 사상자가 나와서, 그 사체를 조선인 청년에게 운반시켰다. 만일 그에 응하지 않으면 일본군인이 총검으로 참살하므로 그 운반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당시 웅기읍민은 누구도 商賣할 수 없었다는 뜻을 방언함	1939.2.28. 求公判
②	경기도 수원군 거주 김철완은 장고봉사건을 회고하며 '露國機 4, 50기가 매일 조선 내를 공습하였기 때문에 일본군 사상자가 속출하여, 그 시체 정리를 조선인 청년에게 시켰는데, 기꺼이 하지 않으면 刺殺했기 때문에 웅기읍민은 누구도 商賣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운운 造言하여 금고 6월.					

검사국이나 조선군의 요약만으로는 수원 거주하는 김철완이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얘기했는지, 그와 웅기읍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다. 다행히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의 수사단계 기록이 남아있다. 이에 따르면 그는 1934년 4월부터 1938년 10월 초까지 웅기읍 공설시장에서 해산물상을 하던 자로 조부 사망을 계기로 본적지인 수원으로 이주하여 해산물소매점을 개업하였다. 동년 10월 말 '마른 오징어' 행상을 하면서 수원읍 요리점 '제일관' 앞 길가에서 그 요리점 경영자와 흥정하던 중 경영자가 상품을 의심하자, 자신이 나진 특산 오징어를 가지고 수원에 오게 된 경위를 말하는 과정에 위의 장고봉 사건 얘기를 한 것이다.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면서 '참고사항'으로 '시국에 관한 악질 범죄'이지만 '사상적 계루'가 없이 단순히

25) ① 高等法院檢査局思想部, 「時局關係の犯罪に關する調査」, 『思想彙報』 제19호, 1939.6, 85면. ② 朝鮮軍參謀部, 『昭和十三年後半期朝鮮思想運動概況』, 1939.2, 150-151면; 『昭和十四年前半期朝鮮思想運動概況』, 1939.8, 179면.

마른 오징어 '판매 방편'으로 말했고 다른 곳에서 이와 같은 '언행을 농'한 적도 없어 '이런 종류의 범죄행위는 소위 시국을 기회로 사리를 꾀하는 것'으로서 '단속상 상당히 주의를 요한다' 했다.[26] 김철완이 어떤 상황에서 위와 같은 '유언비어'를 말했는지 알 수 있다. 당시 장고봉 사건과 관련된 '유언비어'와 비교해보면 장고봉 사건의 상황이 '일제패망인식'이 아니라 자신의 이주와 상품의 신뢰도 제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경찰의 '참고사항'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것 같다.[27] 박수현은 김철완의 말을 직접 체험한 전쟁의 실상을 전달하는 신뢰도 높은 '현재 전황에 관한 유언비어'로 분류했으며, 당시 관련 유언비어에 대해 종합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니라 조선인들의 정확한 현실 인식을 통한 저항과 분노, 두려움의 표출이었다."고 결론을 내린다.[28] 김철완의 경우 실제 말이 교환되는 맥락을 감안하면 이런 말에 대한 처벌이야말로 저항, 분노, 두려움을 유발한 요인일 것이다.

유언비어도 말이며 구어의 세계인 이상 더욱 상황과 맥락이 중요하다. 그런데 위에서 보듯이 검경과 군이 요약한 개요로 그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기 힘들다. 최대한 관련 자료를 찾아서 사건을 재구성해 볼 수 있으나,[29] 개요 외에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오롯이 검경의 시선에 포착되고 가공된 몇몇 유언비어 어구만 남는다.

3. 식량 관련 유언비어 분석

1941년 12월 아시아태평양전쟁 발발 이전과 이후 유언비어를 비교해보면 가장 큰 변화는 경제관련 유언비어가 늘었다는 점이다. 경무국이 조사한 전

26) 水原警察署長, 「造言蜚語被疑事件ニ關スル件」, 1938.12.10.(경기도경찰부장·경성지방법원검사정·관계 경찰서장 수신); 京城地方法院檢事局, 『(昭和十三年)思想ニ關スル情報』에 수록.
27) 당시 장고봉 사건과 '일제패망인식'에 대해서는 변은진, 앞의 책, 358-374면.
28) 박수현, 앞의 글, 207-210면, 215-216면, 220-221면.
29) 경기도 안성 김영배 사건의 경우 위의 『고등외사월보』, 『사상휘보』의 요약문 외에도,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의 사건기록과 서무기록, 법원의 판결문이 남아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자료와 현지 관련자 인터뷰를 통해 또 하나의 해석을 시도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정병욱, 『식민지 불온열전』, 서울: 역사비평사, 2013의 2장 참조.

쟁 발발 직전 1941년 7월부터 8월까지 유언비어, 불온언론 37건 중 경제 관련은 4건(11%)에 불과했다.[30] 반면에 1941년부터 1943년 4월까지 유언비어 사건 중 각 검사국에서 보고한 기소유예 처분 이상의 것을 정리한『大東亞戰爭勃發後ニ於ケル特殊犯罪調: 造言飛語及不敬事件』을 보면 군사관계 220건(40%), 경제관계 188건(34%), 기타 147건(26%)이었다.[31] 경제관련 유언비어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전쟁이 확대 장기화 되면서 통제경제로 생활이 어려워졌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경제관련 유언비어는 다시 식량사정에 관한 것과 기타 물자에 관한 것으로 나뉘는데 전자가 154건으로 82%를 차지했다. 식량사정 유언비어는 다시 배급관계, 식량부족, 식량공출로 나뉘는데 각각 51건, 77건, 26건으로 식량부족이 가장 많았다.[32] 그만큼 당시 식량부족이 절실한 문제였음을 알 수 있다.

식량사정에 관한 유언비어를 배급, 식량부족, 공출로 분류하는 것은 통치정책의 관점에 입각한 것이다. 식량이 부족한 이유는 공출이 많고 배급이 적기 때문이니 전부 '식량부족'에 관한 유언비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식량 관련 유언비어 139건[33]을 발화자 주체의 입장에서 그 내용에 따라 '상황(식량부족)'을 전달하는 것, 그 영향 또는 결과로 '아사', '자살/살해', '치사', '복수'에 이르는 것, 식량부족 상황에 대한 '항의'나 '집단행동'을 언급하는 것 총 7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각각의 건수와 비중은 아래 그림과 같다.

---

30) 朝鮮總督府警務局,『昭和十六年十二月 祕 第七十九回 帝國議會 說明資料』, 1941.12, 148-153면. 4건은 식량(배급) 2건, 저축 1건, 폐품수집 1건이다.

31) 일본의 경우 헌병대사령부가 조사한 자에 따르면 전체 유언비어 중 '경제와 생활'이 1943년 12월 44.3%, 1944년 6월 16.4%, 1944년 12월 11.3%였다. 전쟁 말기로 갈수록 군사관련 유언비어가 높아지는 경향이었다. 池內 一,「太平洋戰爭中の戰時流言」,『社会学評論』第2卷 2號, 日本社會學會, 1951, 41면. 원자료는 南博 等 編, 앞의 책에 수록된 '憲兵司令部資料'이다.

32) 이상의 수치는 山口公一, 앞의 글, 16면에 의거했다.

33) 山口公一의 154건은 자료에 분할 기술된 경우를 모두 1건으로 계산한 것이나, 필자는 "前記와 같은 취지의 유언을 傳說함"과 같이 동일한 유언비어를 화자에 따라 분할 기술한 경우는 1건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139건으로 집계되었다.

■ 1941.12-1943.4 식량 관련 유언비어 139건의 내용에 따른 분류[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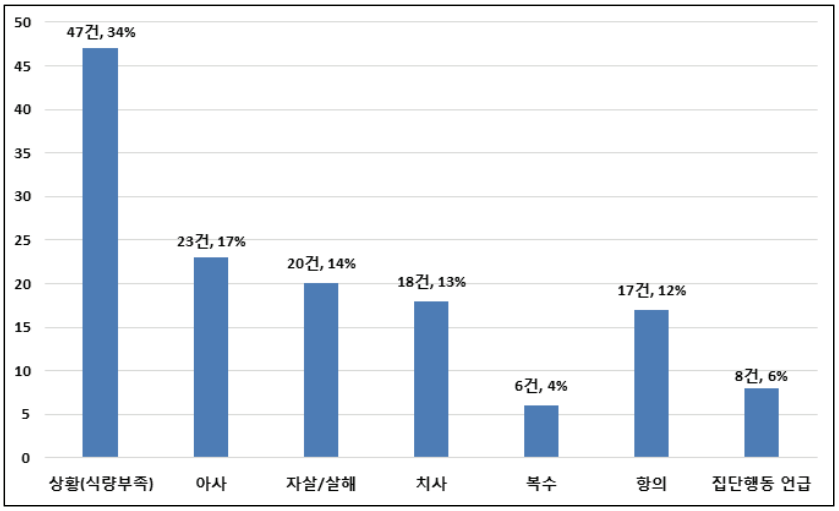

단일 항목으로는 식량 부족의 '상황'을 말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47건, 34%). 공출 강제, 배급미 부족 등으로 인한 식량난을 전하는 유언비어로 대부분 '조선임시보안령' 위반 징역 6개월 이하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가장 높은 수위인 징역 8월의 처분을 받은 경우가 2건 있다. 한 건은 함북 길주역에서 유평(楡坪)역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富山一衡(농업, 41세)이 동승한 여러 승객들에게 '성진부의 식량배급분이 5일치밖에 없다, 성진에 밤에 도착하면 식량이 없어 아사하기 쉽다, 식량 부족으로 空家가 늘었다, 쌀 암거래가 많다' 등의 말을 한 경우다.[35] 다른 한 건은 군북역 출발 의령행 승합자동차 내에서 湖山點信(농업, 50세)이 한 승객에게 '내가 마산 가서 봤는데, 면직원이 공출벼가 적다고 농민을 개처럼 팼다. 이 정도라면 죽는 편이 낫다'고 했던 경우다.[36] 식량 부족의 상황을 전하는 유언비어 중에는 후자처럼 말단 실무자에

34) 高等法院檢查局思想部, 『大東亞戰爭勃發後ニ於ケル特殊犯罪調: 造言飛語及不敬事件』, 1943.5, 81-132면.

35) 『大東亞戰爭勃發後ニ於ケル特殊犯罪調(1943.5)』, 93면. 이하 본문에 나오는 창씨 또는 창씨개명한 인명은 모두 조선인이다. 자료에 '범죄자'가 조선인이 아닌 경우는 비고에 '內地人[일본인]', '중국인' 등으로 표기됐다.

36) 『大東亞戰爭勃發後ニ於ケル特殊犯罪調(1943.5)』, 128면.

대한 불만, 원망이 담겨있는 경우가 많다. 양곡조합 이사의 도지사·경찰부장에 대한 식량 상납, 순사가 암거래 단속 중에 쌀 구입, 군면 직원·조사원이나 순사의 가혹한 식량 공출 등이 회자되었다.[37] 단천군의 德山吉允은 읍사무소, 군청, 경찰서의 공출 독촉에 시달리다 읍내 음식점에서 '관청이 몇 번 공출하라고 해도 없는 벼를 낼 수 없다. 읍사무소의 예정수량이 거의 공출되었으니 지금부터 공출하라는 것은 군과 읍의 직원, 경찰 등이 먹기 위한 것이다'고 얘기했다가 '조선임시보안령' 위반 벌금 100원의 처분을 받았다.[38]

'식량 부족' 유언비어에는 중간에 낀 말단 실무자의 고충을 전하는 경우도 많다. 金成善度(무직, 44세)는 부산의 한 술집에서 '김해군수의 공출할당량 과다 배정에 한 면장이 사직했다'고 말했다가 벌금 50원의 처분을 받았다.[39] 같은 자료의 조선육군특별지원병이나 징병제도실시에 관한 유언비어들에도 강제 할당하는 식민지 권력과 이에 부응하고 싶지 않은 조선인청년층 사이에 낀 지역 말단 지도층의 모습이 자주 나온다.[40]

식량 부족이나 강제 공출에 대한 불만은 체제 비판이나 반일로 이어지기도 했다. 부산의 남창완(회사사무원, 54세)은 이발소에서 '부회에서 소작인은 식량을 공제한 뒤 공출시키고 지주는 전부 공출시키기로 결정된 것 같은데, 공산주의 아닌가.' 했다가 벌금 50원의 처분을 받았다.[41] 경북 영천의 高木任遠(과자소매상, 41세)은 '정부는 식량 부족을 무시하고 농민에게서 강제적으로 공출하게 하는데 이는 빼앗는 것과 같아 정치가 나쁘다. 때문에 조선인은 모두 곤란하다. 더욱 이때 米英의 비행기가 일본 내지의 대도시를 폭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가 징역 6월의 처분을 받았다.[42]

식량 부족의 상황을 강조하는 유언비어로 '아사' 23건이 있다. 전형적인

37) 『大東亞戰爭勃發後ニ於ケル特殊犯罪調(1943.5)』, 94-95면, 112면, 124면, 125면, 127면.
38) 『大東亞戰爭勃發後ニ於ケル特殊犯罪調(1943.5)』, 130면.
39) 『大東亞戰爭勃發後ニ於ケル特殊犯罪調(1943.5)』, 129면.
40) 이에 대해서는 山口公一, 앞의 글, 20-22면 참조.
41) 『大東亞戰爭勃發後ニ於ケル特殊犯罪調(1943.5)』, 127면. 실제 당시 공출이 강화되면서 1942년 산미부터 지주들도 일단 소작료 전량을 공출하고 도시거주자와 같이 배급받도록 하였다. 이송순, 『일제하 전시 농업정책과 농촌 경제』, 선인, 2008, 202면.
42) 『大東亞戰爭勃發後ニ於ケル特殊犯罪調(1943.5)』, 127-128면.

아사 관련 '유언비어'는 타지방의 식량난을 전하면서 나온다. 충북 제천의 齊原國夫(광산사무원, 33세)는 모씨의 집에서 식산국 기수 등 수 명에게 '단양군 대강면 모처에서 식량배급이 매우 원활하지 못해 3명의 아사자가 나왔는데 이웃이 이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재소에 호출되어 설유를 들었다'고 말하여 조선임시보안령 위반, 벌금 50원의 처분을 받았다.[43] 이런 식으로 강원도, 경기도, 경성, 일본의 식량사정이 심각함은 전하면서 아사 또는 아사상태를 그 증거로 말했다.[44]

식량부족으로 '자살·살해'에 이르는 '유언비어'도 20건이었다. '황해도 장연군에서 아무개가 배급미를 사려도 살 수 없어 자식들이 굶주려 울부짖다 쓰러져 있는 상황을 보고 縊死했다더라.', '최근 어느 지역에서 가족 4명이 배급미를 받지 못해 아이 두 명이 아사하고 부모는 비관한 나머지 자살했다더라.'와 같은 유언비어다.[45] 식량 절도 후 발각 되자 자살했다, 돈이 있어도 식량을 구입하지 못해 자살했다는 유언비어도 많았다. '살해'는 가장 극단적이고 엽기적인 경우로 모친이 유아를 살해하여 먹었다는 유언비어가 2건이 있다.[46] 식량 부족으로 '자살'에 이르는 유언비어는 당시 일본에도 많았던 것 같다. 일본 내 각 검사국이 1941년 12월 말에서 1942년 3월 말까지 보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近時に於ける飯米不足の情況及之に伴ふ流言等發生情況(1942.3)」을 보면 "식량부족에 수반한 유언 및 기타 특이상황은 핍박의 정도에 비례하여 발생하고 그 양태도 생활면의 분위기나 반영이 많아 본능적으로 식량부족은 죽음을 연상하듯이 유언 등에서 죽음에 관한 것이 태반을 점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죄를 범하는 본능과 도덕에 얽혀있는 것, 자식에 대한 정에 얽혀 있는 것 등이 많다"고 했다.[47] 이 자료는 이러한 유언비어를 '비극'으로 분류하고 7건을 제시했는데, 필자의 기준으로는 '아사' 및 '치사' 각 1건을 빼면 5건 중 쌀 부족을 비관하여 모친 자살, 자식을 죽이고

43) 『大東亞戰爭勃發後ニ於ケル特殊犯罪調(1943.5)』, 81면.
44) 『大東亞戰爭勃發後ニ於ケル特殊犯罪調(1943.5)』, 83-85면, 89면, 108면, 109면.
45) 『大東亞戰爭勃發後ニ於ケル特殊犯罪調(1943.5)』, 81-83면.
46) 『大東亞戰爭勃發後ニ於ケル特殊犯罪調(1943.5)』, 122-123면.
47) 赤澤史朗 ほか 編, 『資料日本現代史』 第13卷, 東京: 大月書店, 1980, 95면.

자신도 자살한 경우 각 1건, 다른 가족(부나 형)의 몫까지 먹다가 다툼이 일어나 살해와 자살이 일어난 경우 3건이었다.[48] 뒤의 가족 내 식량 다툼은 식민지 조선에서는 아직 보이지 않는 유언비어다. 다툴 끼니도 없는, 그래서 아이까지 먹는 유언비어의 등장은 식민지의 식량 사정이 더 열악했음을 반영한 것인 것 같다.

식량 부족이 가정의 파국으로 귀결되는 '자살'형 유언비어가 가족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나 정부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이라면 권력에 의해 죽음에 이르는 '치사'형 유언비어는 좀 더 직접적인 원망과 비판을 담고 있다. 치사'(致死)' 19건 중 가장 많은 것은 '암거래로 식량을 구해 오다가 경찰·순사에 붙잡혀 식량은 빼앗기고 2-3일 유치되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들이 굶어 죽었다'는 '유치(留置)-치사(致死)'형 9건이다. 그 사례를 정리한 〈표3〉을 보면 보통 주체는 주부이고 아이들이 죽은 걸 보고 자살하기도 한다. 전쟁 시기 여러 이유로 남편이 부재하고 가사, 특히 식량을 책임져야 하는 여성의 모습이 보인다. 또 이 이야기들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대부분 순사나 경찰은 사정을 들어주지 않는, 소통이 되지 않는 엄한 존재로 상정되었다는 점이다. 그나마 〈표3〉 7번의 형사가 집까지 가본 유일한 경우다.

■ 〈표3〉 식량관련 유언비어 '유치(留置)-치사(致死)'형 9건[49]

	廳名	職業	氏名	年齡	사실 개요					적용법	처분
					언제	장소1	장소2	누구에게	발언 내용		
1	安東支	군농회 지도원	金朝龍文	32	1942. 4.26.	경북 의성군 안계면 교촌리	주류판매업 영전현우집	농회기수 평야석구 외 4명	(…) 또 北鮮의 어떤곳에서는 夫 출가중 妻가 모의집에 가서 쌀 1두쯤을 얻어돌아오는 도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유치장에 들어가 3일후 쌀을 빼앗기고 나서 석방되어 귀택하여보니 아이 3인은 아사하였다, 당시 신문에도 나왔다	조선 임시 보안령 위반	징역 6월
2	咸興地	주류 판매업 (여)	高山桂花	38	1942. 6.1.	함경선	원산발 함흥방면행 열차 내	동행중의 대산은택 외 1명	최근 함흥의 어떤 집 모친이 粟2승을 사서 돌아가는 도중 순사에 발각되어 암거래로 3일간 구류된 뒤 귀택하여보니 집을 나올 때 자물쇠를 채우고 나왔기 때문에 아이 2명이 아사하였다.	조선 임시 보안령 위반	징역 7월

48) 같은 책, 101-102면.

3	咸興地	노동	池田榮鎭	18	1942. 6.4.	함남 홍남읍 서호리	자택	친구 池田錫均 외 3명	최근 함흥부내의 모부인은 배급미가 부족해서 시골에 가서 몰래 쌀을 사서 돌아오는 도중에 발견되어 3일간 유치되었다가 집에 돌아와보니 아이들은 모두 굶어 죽었다	조선 임시 보안령 위반	기소 유예
4	惠山支	無職 (女)	米双可梅	27	1942. 6.23.	함남 삼수군 신파면 신가파리	大和여관	여관주 利川はる 외 2명	함흥의 모조선인 부인은 飯米 2두를 몰래 사서 돌아오는 도중에 발각되어 2일간 경찰에 유치되어 있는 동안에 3명의 아이가 아사하여, 이를 본 모친도 자살하였다	조선 임시 보안령 위반	징역 6월
5	平壤地	日稼 勞働	古山鐘泳	44	1942. 7.1.	평남 대동군 금제면 원장리	노상	마을주민 箕田承潤 외 4명	평양부내에서 어떤 주부는 배급미 부족 때문에 시골로 쌀사러갔다가 돌아오는 도중에 경관에 발견되어 쌀이 몰수되고 유치되어 수일 후 귀택하여보니 남아있던 夫 및 유아1명은 아사하였다고 방언함.	조선 임시 보안령 위반	징역 6월
6	釜山地	무직 (여)	兪凡室	51	1942. 11.17.	부산부 초량정	금성재수집	금성우진 외 1명	어떤 여자가 남편 사망 후 유아 2명을 데리고 사는데 식량부족 때문에 자녀2명을 집에 남겨두고 자물쇠를 채우고 시골로 가서 쌀 2승을 구입하여 귀택 도중 경찰관에 발각, 인치되고 수일 후 방면되어 귀택하여보니 유아 2명이 아사하였으므로 이를 비관하여 자살하였다.	조선 임시 보안령 위반	벌금 50원
	釜山地	병원 사무원	金城又進	16	1942. 11.20.	부산부 초량정	海山病院	현봉선범 외 1명	전게 兪凡室에게서 들어 안 유언을 다시 전설함.	조선 임시 보안령 위반	기소 유예
7	安東支	농업	花吹赫元	26	1942. 12.12.	경북 의성군 안계면 양곡동	김원남수집	同人 외 2명	함북 온성군 소재 富人炭鑛 (…) 소장은 처자3명을 부양하고있는데 일이 없는 날은 식량배급이 없으므로 일자리를 찾으러간 바, 그 가족은 식량배급을 받지못해 그 처는 소지한 30원으로 만주국 훈춘에 가서 粟3斗를 사서 돌아오는 도중에 형사에게 걸려 경찰서에 2일간 유치되었는데, 아이들일이 걱정되어 형사와 함께 귀택해보니 아이2명은 아사하였던 일이 있었다. (…)	조선 임시 보안령 위반	징역 6월

49) 高等法院檢查局思想部, 『大東亞戰爭勃發後ニ於ケル特殊犯罪調: 造言飛語及不敬事件』, 1943.5, 81-132면.

8	居昌支	釀造場職人	錫山又俊	42	1942.12.24.		자택	김본갑순외 2,3명	부산에서 철도선로에 접해 있는 외딴 집의 女某가 실내에 아이 2명을 두고 기차가 위험하므로 바깥에서 자물쇠로 잠그고 외출하여 시골에서 쌀을 암거래로 구해 돌아오는 도중에 경찰관에 발각되어 3일간 유치되어 취조를 받고 집에 돌아와 보니 이미 두 아이는 죽어있었다더라.	조선임시보안령위반	약식청구중
9	釜山地	광산인부	金田生水	26	1943.2.7.	함안군함안면괴산리	정두환집	동인외 4명	(…) 최근 부산의 어떤 조선인 가정에서 쌀이 없어 곤란하다가 시골에 가서 백미 3승을 구매하여 기쁘게 돌아오는 도중에 순사에게 발각되어 그 밤 경찰서에 유치되어 다음날에 귀가하여 보니 집에 있던 아이 2명이 아사하였으므로 그 뒤 남편이 알고 취조했던 순사는 징역에 처해졌던 일이 있다.	조선임시보안령위반	징역6월

'유치-치사'형 다음으로 많은 것은 '검색(檢索)-치사(致死)'형 5건이다. '암거래로 식량을 구해 오다가 경찰·순사의 검색을 받는 과정에 아이 또는 본인이 죽었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자면 '경성방면에서는 식량의 암거래가 성행하여 그 단속이 비상히 엄중하다. 최근 어떤 여자가 아이를 업고 통행하던 중 단속경찰관이 암거래 식량을 등에 숨겨 운반하는 것이라 오인하고 등에 색대를 찔러 그 여자를 검문함에 따라 아이가 찔려서 즉사해서 큰 문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경찰관은 면직되었다'와 같은 유언비어다.[50] 이런 형의 유언비어는 모두 1942년 11월 상순에서 12월 상순에 집중해서 발생했으며, 지역으로는 황해도 2건, 경북, 경성, 강원 각 1건이다. 경찰·순사가 식량으로 오인해 색대나 검으로 찔러 죽은 아이 이야기가 3건이고 임신한 여인 이야기가 2건이다. 뒤 이야기 중 1건은 순사의 복부 발길질에 사망한 경우고, 1건은 경찰관이 '복부에 손을 찔러 넣어 검문'해서 유산된 경우다. 사안이 위중하다고 생각해서인지 다른 유언비어와 달리 이로 인해 순사·경찰이 처벌받았다는 후일담을 곁들인 경우가 5건 중 4건이었다. 식민지 권력의 가혹한 암거래 단속, 그에 대한 민중의 반감이 느껴지는 유언비어다. 나머지

50) 『大東亞戰爭勃發後ニ於ケル特殊犯罪調(1943.5)』, 113면.

'치사'형 유언비어에 비친 식민지 권력의 이미지도 엄혹하다. 쌀 부족에 항의하거나 암거래하다 경찰에 인치되어 구타, 고문 등에 의해 사망한 이야기가 3건이다.[51] 애국반원에게 암거래한 쌀을 빼앗겨 자살한 이야기 1건, 단속을 피해 도망가다 노상의 아이를 압도하여 죽인 이야기 1건도 '치사'형이라 할 수 있다.[52]

'복수'형 유언비어도 민중과 식민지 권력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복수'형 6건은 식량 단속자를 사적으로 처단(살해 5건, 구타 1건)하는 이야기로 1942년 6-8월에 모두 발생했으며, 이야기의 무대는 평양·평안도가 4건, 황해도 전북 각 1건이다.[53] 복수의 주체는 모두 남편 등 남자이고 복수의 대상은 평양·평안도가 전부 경방단원(警防團員), 황해도와 전북은 각각 면장과 구장이었다. 식량 부족의 '상황'을 전하는 유언비어 중에도 말단 실무자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담겨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복수도 그들을 향했다. 오직 뒤에 나오는 '항의'형 유언비어 중 1건만 순사에 대한 복수 이야기가 있다. 황해도 수안군 한 마을에서 시국식량대책협의를 하는 과정에 한 농민이 군속 등에게 공출량 과다 배정을 항의하던 끝에 '평양에서는 순사가 농민에게 원한을 사 찔리어 죽었다 하더라.'는 말을 흘렸다.[54]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아무리 '유언비어'라도 복수의 대상으로 순사·경찰과 같은 식민지 권력의 본령을 상정하기는 어려웠던 같다.

일본에서도 당시 경찰을 비판하는 유언비어가 적지 않다. 1944년 6월 내무성 경보국(警保局) 경제보안과에서 작성한 식량부족에 관한 유언비어 조사 자료를 보면 '심각한 식량핍박사정을 반영하여 식량을 둘러싼 유언비어는 점차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유포'되었으며, 경찰과 헌병 간의 대립상극을 다룬 것과 경찰의 가혹한 단속에 관한 것이 주류라고 했다.[55] 식민지 조선에도 식량관련 유언비어 중 경찰과 헌병의 대립을 다룬 이야기가 있으나 1건에 불

51) 『大東亞戰爭勃發後ニ於ケル特殊犯罪調(1943.5)』, 102면, 104면, 119면.
52) 『大東亞戰爭勃發後ニ於ケル特殊犯罪調(1943.5)』, 104면, 122면.
53) 『大東亞戰爭勃發後ニ於ケル特殊犯罪調(1943.5)』, 87-89면, 90면, 107면, 109면, 110면.
54) 『大東亞戰爭勃發後ニ於ケル特殊犯罪調(1943.5)』, 130면.
55) 內務省警保局経済保安課, 「食料不足を繞る流言蜚語の概要」, 1944.6.10, 1면.

과했다.[56] 일본인처럼 식민지 권력은 세분해서 바라보지 않았던 것 같다. 일본에서도 앞의 식민지 조선에서 본 '색대 검색에 의한 아이 사망'(검색-치사), 모(母) 유치 후 기다리던 아이 사망(유치-사망) 유언비어가 없는 것은 아니나[57] 식민지 조선에 비해 경관의 비리, 불법행위를 풍자하는 유언비어가 많았다. 위의 자료에서 '警民離間에 관한 것'의 예로 든 유언비어 사례 11건 중 가혹한 단속에 관한 것이 5건인 반면 경관의 비리나 불법 행위에 관한 것이 6건이었다. 경찰·순사 본인이나 처의 식량 암거래 또는 식량 절취, 암거래 묵인, 몰수품 착복 등의 내용이다. 1944년경 자료로 추정되는 「大阪府における食糧窮迫を繞り警察官を非難する 流言蜚語の主なるもの」에 나와 있는 12건의 유언비어는 모두 경관의 비리, 불법행위에 관한 것이다.[58] 식민지 조선의 식량 관련 유언비어에서 경찰·순사의 비리는 앞의 식량 부족 상황 유언비어에 간접적으로 두 번 나올 뿐이다.[59] 일본에 비해 식민지 조선의 식량 유언비어에 나타나는 경찰, 식민지 권력은 더 권위적이고 폭력적이며, 그래서 보통사람들이 바라거나 의지하는 바도 적었다. 반면에 일본의 유언비어를 보면 일본의 보통사람들은 권력에 대한 동의,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기대감과 실망이 있었던 것 같다. 식민지 조선의 유언비어를 보면 그런 경우가 드물다. 식민지 지배는 엘리트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보통사람들, 민중에게는 '헤게모니 없는 지배', 강압에 의한 지배라는 점이 드러난다.

'집단행동'형 유언비어 8건 중 6건은 타 지역민이 식량 공출, 배급 등에

---

56) 『大東亞戰爭勃發後ニ於ケル特殊犯罪調(1943.5)』, 116면.

57) 지금까지 각각 1건을 확인했는데 모두 아오모리(靑森)현에서 나온 유언이다. 內務省警保局経済保安課, 「食料不足を繞る流言蜚語の概要」, 1944.6.10, 3면.

58) 赤澤史朗 外 編, 앞의 책, 447-448면.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이 사이 나고야에 갔다가 돌아오는 關[阪?]急上六驛에서 아이들을 동반한 여자가 큰 짐을 가지고 곤란해 하는 바 옆의 학생이 내가 들어주겠다고 하고 그것을 맡아서 개찰구를 나왔다. 제복경찰관이 와서 학생에게 '그것은 무엇인가'라 묻자 학생은 여인이 맡긴 거라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고 답했다. 경관은 믿지 못하고 승강이를 하던 끝에 [짐을] 열어보니 쌀과 야채가 있었다. 경관이 추궁하고 있는데 '아빠'하고 아이들이 경찰관 있는 곳으로 뛰어 다가왔다. 이를 본 학생이 이 짐의 주인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여인이라고 말하자 경관은 얼굴이 빨개져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 주위에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짐과 경관의 얼굴을 번갈아보며 어이없어 하였다 운운."

59) 『大東亞戰爭勃發後ニ於ケル特殊犯罪調(1943.5)』, 112면, 130면.

대한 항의로 면사무소나 군청을 습격(3건)했거나 시위·소동(3건)했다고 전언하는 경우다.[60] 실제 여부 상관없이 식량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며 어느 정도 발화자의 바람이 담긴 유언비어라 할 수 있다. 미래의 반란이나 내란을 예언하는 유언비어도 3건(시위 1건과 중복) 있는데[61] 이것도 '자기표현적' 발화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청주에서 金光祥鉉(농업, 35세)은 면서기 등에게 '면은 농민에게서 보리를 강제 공출해 놓고서도 대신해야할 식량을 배급하지 않는데, 백성은 무엇을 먹고 생활하는가. 한국시대에 군대에 식량을 배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 군부대신이 살해된 전례가 있다. 배급의 불공평을 감행하는 면장이나 면서기는 살해되어도 좋다.'고 했다가 벌금 200원을 물어야 했다.[62] 은근한 협박이고 식량통제에 대한 견제이다.

'항의'형 16건은 '-하더라'는 '보도'가 아니라 실제 행한 '불온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면 주최 저축장려회, 관리미공출독려좌담회나 시국식량대책협의회에서 '저축을 장려하기 전에 식량 배급을 바란다.', '전부 벼를 공출하라면 백성은 죽으라는 소리와 같다.', 다른 마을에서는 '원한을 산 순사가 농민에게 살해되었다'는 등 항의와 협박을 했다.[63] 미곡공출독려 중인 면서기, 구장, 순사, 군농회기수 앞에서도 '식량이 부족하면 병사도 농민도 아사한다.', '옛날은 농자천하지대본인데 현재는 악정이다', '농민도 모두 공출해서 사서 먹는다.', '지금 내가 먹을 것도 없어 곤란하니 배를 자르더라도 공출은 할 수 없다', '같은 조선인이면서 먹기 위해 숨긴 것을 찾아야 하는가.'라며 따졌다.[64] 강원 이천의 山本成川(노동, 59세)이 양곡배금 담당자 집에 모인 마을 주민들에게 '식량을 배급하여 주지 않으면 조식은 面長 댁에서 석식은 郡守 댁에서 먹으면 된다. 더욱 심할 때는 자동차에라도 깔려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자, 같은 자리에 있던 松田東憲(洗濯業, 28세)은 '관리에게만 많이 배급하고 우리에게는 소량밖에 배급하지 않는 것은 괘씸하다. 만일

60) 『大東亞戰爭勃發後ニ於ケル特殊犯罪調(1943.5)』, 81-82면, 86면, 88-89면, 96면, 122-123면.
61) 『大東亞戰爭勃發後ニ於ケル特殊犯罪調(1943.5)』, 86면, 108면, 125-126면.
62) 『大東亞戰爭勃發後ニ於ケル特殊犯罪調(1943.5)』, 86면.
63) 『大東亞戰爭勃發後ニ於ケル特殊犯罪調(1943.5)』, 86면, 125면, 130면.
64) 『大東亞戰爭勃發後ニ於ケル特殊犯罪調(1943.5)』, 97면, 125-127면, 132면.

우리들이 아사할 때는 식량배급관계 책임자를 죽인 뒤에 나도 죽자는 결심이다.'고 했다. 둘은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65] 부산의 林永化(大工, 50세)는 음식점에서 수 명에게 '쌀도 술도 배급하므로 이 상태로는 배 가득 먹을 수 없다. 지금 배급제라면 조선인은 모두 아사할 것이다. 내가 아사하게 되면 먼저 배급소원은 물론 총독도 찔러 죽이고 죽겠다. 어차피 죽어야 한다면 그대로는 죽지 않겠다.' 했다가 징역 6월 처분을 받았다.[66] 물론 '말'에 불과하지만 식량 부족으로 인한 고통과 불만이 극에 달해 식민지 지배가 '아래로부터' 흔들리고 있는 분위기다.

한 가지 생각해볼 점은 '항의'와 '집단행동'형, 특히 '항의'형은 '유언비어'라기보다는 '반국가적 언동'이다. 육군형법상 유언비어는 '사실 보도'와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을 동반하지 않는 '의견'이나 주장은 '유언비어'죄로 다루지 못했다.[67] 그런데 1941년 유언비어 단속법이 정비되면서 '조선임시보안령'에 의해 '시국'에 관한 어떠한 말도 식민지 권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처벌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유언비어' 자료에는 이러한 의견이나 주장, 항의가 많이 포함된 것 같다. 전시기 민중의 항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좋지만 유언비어라는 양식과는 다른 부류의 말로 별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4. 결론

전시기 유언비어, 불온언동에 관한 많은 사례의 집적은 검경 실무자들이 관련 법규의 적용 범위, 양형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실무적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자신들이 범죄의 구성 요소라고 생각한 점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되어 있다. 유언비어도 말이며 구어의 세계인 이상 상황과 맥락이 중요한데, 검경과 군이 요약한 개요로는 그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기 힘들다.

65) 『大東亞戰爭勃發後ニ於ケル特殊犯罪調(1943.5)』, 84-85면.
66) 『大東亞戰爭勃發後ニ於ケル特殊犯罪調(1943.5)』, 93면.
67) 菅野保之, 『陸軍刑法原論』, 東京: 松華堂, 1943[1940], 526면.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은 말은 의견일 뿐 유언비어로 처벌되지 않았다. "흥, 일지사변인가, 사변이 뭐냐. 저런 것은 아이들 싸움 같은 것이다. 출정이 뭐지. 선동된 것이다 (…) 그런 것에 많을 비용을 쓰고 큰 소란을 피우는 것은 최고 바보다. 천치다.(和歌山 中岩鹿蔵)" 西ケ谷徹, 앞의 글, 32-33면.

최대한 관련 자료를 찾아서 사건을 재구성해 볼 수 있으나, 개요 외에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검경의 시선에 포착되고 가공된 몇몇 유언비어 어구만이 그 사람, 그 사건의 증거로 남게 된다.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면서 유언비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1942년 전후 식민지 조선의 식량관련 유언비어를 일별해보면 전체 139건 중에 단일 사안으로 식량 부족의 '상황'을 말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47건, 34%), 식량 부족으로 死傷(대부부 사망)에 이르는 유언('아사' '자살/살해' '치사' '복수')이 67건으로 절반에 이른다(48%). 그 대부분의 이야기는 죽음으로 인해 가정이 파국에 이르는 비극으로 끝난다. 가족주의가 강한 사회에서 가정의 파괴야말로 가장 호소력이 있는 주제이다. 이런 비극 이야기는 일본에도 적지 않지만 식민지 조선이 더 극단적이다. 가정을 파괴하는 식민지 권력에 대한 분노를 야기하고 그래서 '저항의 저류'가 될 수 있지만, '신파성'처럼 체제를 감수하는 '순응의 저류'가 될 수도 있다. 식량 부족으로 인한 죽음 이야기는 외부의 압도적인 힘(식민 권력)에 의한 주체의 좌절, 패배, 그로 인한 자학과 자기연민이라는 측면에서 '신파성'과 유사한 세계전유방식이라 할 수 있다.[68]

식민지 조선의 식량 유언비어에 등장하는 식민지 경찰은 일본의 그것에 비해 더 권위적이고 폭력적이다. 보통사람들이 경찰에 바라거나 의지하는 바도 적었고 감히 풍자를 하지도 못했다. 반면에 일본의 유언비어를 보면 보통사람들의 권력에 대한 동의,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기대와 실망이 보이고, 그래서 종종 경찰은 풍자의 대상이 되었다. 유언비어에 비친 식민지 경찰의 모습에서 식민지 지배는 적어도 민중에게 '헤게모니 없는 지배'였음이 드러난다.

68) 20세기 초중반 한국인의 세계전유방식으로 신파성에 대해선 이영미, 『한국대중예술사, 신파성으로 읽다: 《장한몽》에서 〈모래시계〉까지』, 푸른역사, 73-74면 참조.

▮ 참고문헌

警務局保安課,『治安狀況』26報-50報, 1937.09.14-1938.10.15.
京城地方法院檢事局,『(昭和十三年)思想ニ關スル情報』.
高等法院檢事局,『朝鮮檢察要報』제1-13호, 1944.3-1945.3.
高等法院檢事局,『朝鮮刑事政策資料—昭和17年度版』.
高等法院檢事局思想部,『思想彙報』, 제13-속간호 1937.12-1943.10.
_____,『大東亞戰爭勃發後ニ於ケル特殊犯罪調:造言飛語及不敬事件』, 1943.5.
_____,『大東亞戰爭勃發後ニ於ケル特殊犯罪調:保安法違反事件及內地等ニ於ケル各種言論事犯』, 1943.8.
宮田節子 編,『(十五年戰爭極祕資料集) 高等外事月報』1-2, 高麗書林, 1988.
_____,『朝鮮思想關係資料集』6, 高麗書林, 1993.
南博 等 編,『近代庶民生活誌 ④ 流言』, 東京: 三一書房, 1985.
內務省警保局經濟保安課,「食料不足を繞る流言蜚語の概要」, 1944.6.10.
西ケ谷徹,「支那事変に関する造言飛語に就いて」(1938), 社会問題資料研究會 編,『社会問題資料叢書』第1輯, 京都: 東洋文化社, 1978.
水原警察署長,「造言蜚語被疑事件ニ關スル件」, 1938.12.10.
赤澤史朗 外 編,『資料日本現代史』第13卷, 東京: 大月書店, 1980.
朝鮮總督府,『朝鮮總督府帝國議會說明資料』第6卷, 東京: 不二出版, 1994.

宮田節子, 이형랑 역,『朝鮮民衆과 皇民化 政策』, 서울: 一潮閣, 1997.
문준영,『법원과 검찰의 탄생: 사법의 역사로 읽는 대한민국』, 역사비평사, 2010.
박수현,「중일전쟁기 '流言蜚語'와 조선인의 전쟁 인식」,『한국민족운동사연구』제40집,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4, 195-222면.
박용하,「日帝末期 流言蜚語現象에 對한 一考察」,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0.
변은진,「유언비어를 통해 본 일제말 조선민중의 위기담론」,『아시아문화연구』제22집, 가천대 아시아문화연구소, 2011, 53-79면.
_____,『파시즘적 근대체험과 조선민중의 현실인식』, 선인, 2013.
이송순,『일제하 전시 농업정책과 농촌 경제』, 선인, 2008.
이영미,『한국대중예술사, 신파성으로 읽다:《장한몽》에서 〈모래시계〉까지』, 푸른역사, 2016.
이시재,「日帝末의 朝鮮人流言의 硏究」,『한국사회학』제20집, 한국사회학회, 1987, 211-230면.
정병욱,『식민지 불온열전』, 역사비평사, 2013.
_____,「경성지방법원 검사국 기혹과 '사상부(思想部)'의 설치」,『기록학연구』제40호, 한국기록학회, 2014, 95-130면.

佐藤健二,『流言蜚語 : うわさ話を讀みとく作法』, 東京: 有信堂高文社, 1995.
菅野保之,『陸軍刑法原論』, 東京: 松華堂, 1943[1940].
山口公一,「'造言飛語'にみる戰時末期の朝鮮民衆と社会」,『史海』第57號, 東京學芸大學史學會, 2010, 12-26面.
池內 一,「太平洋戰爭中の戰時流言」,『社会学評論』第2卷 2號, 日本社會學會, 1951, 30-42面.

【Abstract】

Anti-Japan Incidents and Colonial Joseon People's Perception during the Wartime (1937-1945) —Focusing on the 'groundless rumors' on food supply—

Jung, Byung-Wook*

This article purports to review information, collected by the colonial governors, on groundless rumors and analyze the people's language patterns evident in those rumors to better understand their life and culture.

The colonial governors of wartime collected numerous cases of anti-Japan words and actions, especially the groundless rumors. The groundless rumors played a significant role for prosecutors, police officers and military police officers in determining the scale of punishment and discerning whether a certain law would be applicable to a case. For this reason, most of the rumor cases collected by the officials were organized around what they considered criminal component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specific context of the groundless rumors just by studying the cases collected by the colonial officials, which needs to be considered when studying these sources.

48 percent of the groundless rumors on food supply in colonial Joseon around 1942 were about death caused by lack of food and destruction of a household as a result. Destruction of a family could be a strong convincing factor in a strongly family-oriented society. Such pattern of tragic stories could be found in Japan as well but the cases in colonial Joseon were more drastic. Such rumors could become the motivation for resistance against the colonial power but on the other side, it could also become the motivation for conformity like the nature of Shin-pa.

The colonial police officers portrayed in the groundless rumors on food supply, who represent the colonial power, are more authoritarian and violent than those in Japan. Common Joseon people rarely relied on the police and could not dare satirize the

* Professor,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Korea University.

police. In contrast, the Japanese groundless rumors show that the common Japanese population approved of the ruling class and thus had expectations and disappointments towards the police, which led them to satirize the police in their rumors. The portrayal of colonial police officers in the groundless rumors indicate that the colonial governance was a "governance without hegemony," at least to the common people of Joseon.

Keywords: the Wartime (1937-1945), Colonial People, groundless rumors, lack of food, tragic stories, governance without hegemony.

접수일: 2018.03.31 ‖ 심사일: 2018.04.11 ‖ 게재확정일: 2018.05.04